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15
----------	-----

제 출 일 : 2025. 5. 30.

제 출 자 : 남양주시장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기준 금액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4조의3 청구 또는 신청 금액을 2천만 원 이하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선정 대리인 기준 금액 정비
 - 선정 대리인 신청 기준 금액 상향 : 1천만 원 -> 2천만 원
(안 제4조의3)

3. 참고사항

- 부서협의 결과
 - 1) 협의기간 : 2025. 3. 17. ~ 2025. 3. 19.
 - 2) 협의결과
 - 비용추계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성별영향평가 : 체크리스트 제출로 절차 종료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입법예고 결과
 - 1) 예고기간 : 2025. 3. 27. ~ 2025. 4. 17.(21일)
 - 2)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 본문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 · 과		세정과
입안자	관 · 과장 직위 · 성명	세정과장 장 동 단
	팀장 직위 · 성명	세정기획팀장 곽 유 진
	담당자 성명 · 전화	장 지 연 (590-2186)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또는 신청 금액이 <u>1천만원</u>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의3(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 ----- ----- ----- --- <u>2천만원</u> ----- ----- ----- ----- ----- ----- -----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4조의3(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나.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로 재정수반 요인 없음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청구·신청 금액 상향 : 1천만원 -> 2천만원)

2. 비용추계서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개정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청구·신청 금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재정경제국 세정과장 장동단

붙임 2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세정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2025A경기남양027)

1. 세정과-9109(2025. 3. 1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에 해당하므로,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여 성 아 동 **배진위**.

주무관	이연희	여성정책팀장	홍주희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2025. 3. 18.
협조자						
시행	여성아동과-9994	(2025. 3. 18.)	접수	세정과-9139	(2025. 3. 18.)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별관4층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3965	팩스번호	031-590-2269	/ yhllee0127@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

붙임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세정과장

(경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2025-27,28)

세정과-9084(2025.3.17.)호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및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평가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관련 권고사항 반영 여부

■ 평 가 결 과 : **원안동의**

붙임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각 1부. 끝.

남 양 주 시 장



주무관 김주현 청렴윤리팀장 이정주 감사관 2025. 3. 18. 문경석

협조자

시행 감사관-2986 (2025. 3. 18.) 접수 세정과-9191 (2025. 3. 18.)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4719 팩스번호 031-590-2079 / sjh99006@korea.kr / 비공개(5)

- 청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 리 번 호	2025-남양주-27		
자 치 법 규 명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평 담 당 부 서	감사관	평 가 담 당 자 직 급 및 성 명	행정7급 김주현
입 안 부 서	세정과	입 안 담 당 자 직 급 및 성 명	세무7급 장지연
평 가 결 과 통 지 일	2025. 3. 18.		
통 보 내 역	원 안 동 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2025년 3월 18일 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 감사관 (담당자 / 연락처 : 김주현 / 031-590-4719) 세정과장 귀하			

붙임 4 규제심사 결과 통보서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세정과장

(경유)

제목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안)

1. 남양주시 세정과-9066(2025. 3. 17.)호와 관련됩니다.
 2.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 해당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에 대한 대리인 제도의 기준을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에 따라 완화하는 내용이며,
 3.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 해당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기준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대리인 신청 서식 기준 정비 및 불필요한 문장부호 생략 등을 위한 자구정비 등에 관한 내용으로,
 4.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행정규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 끝.

의 회 법 무 과 장 영

주무관	조현기	규제개혁팀장	안재현	의회법무과장	2025. 3. 17. 양기영
협조자					
시행	의회법무과-3402	(2025. 3. 17.)	접수	세정과-9099	(2025. 3. 17.)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7320	팩스번호	031-590-2900	/ hqj1235@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

붙임 5 입법예고 결과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입법예고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제명 :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3. 27.(목) ~ 4. 17.(목) / 21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라.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마.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등 입법절차 진행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주우관	장자연	세정기획팀장	곽유진	세정과장	장동단	재정경제국장	전결 2025. 4. 21. 이백영
협조자	의회법무팀장	김철	의회법무과장	망기영			
시행	세정과-13688			접수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세정과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2186	팩스번호	031-590-2189	/ sprite0817@korea.kr	/ 대국민 공개		

-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